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4호)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7호)

2026.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총괄적 검토	5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6
나.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4
다.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개정	20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21
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	21
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 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	24
다. 피해자 보호 취지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관련 정비	27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규정 정비	30
마.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	33
바. 그 밖에 추가 범죄 예방 및 인용조문 등 정비	35
3.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38
4. 종합의견	41

I. 제안경위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8. 24.

다. 회 부 일 : 2026. 8. 25.

2.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8. 24.

다. 회 부 일 : 2026. 8.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과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

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26항 등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사·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함.

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1항 등 신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으로 가지도록 정비함.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신설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5항 등 신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
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이에 맞춰 정비함.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1
항 등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
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
을 정비함.

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3항 등
신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
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함.

2.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1조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2개 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시행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관련 법률의 후속 정비를 위한 입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및 조직 개편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규정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취지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은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i)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에 따라 ii)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운 신설하는 내용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은 i)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권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ii)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의 청구와 집행은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전제로 한 영장의 청구와 사법경찰관에 의한 집행만 가능하게 하며, iii)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상호 협력으로 대체하며, vi)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

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v) 검사의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의신청·재정신청권자 확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 정비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선원법」 제127조¹⁾ 등에서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15개 법률 29개 규정을 정비함.

2)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 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²⁾, 「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2의 ‘의원면직 제한’³⁾과 같이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송

1) 「선원법」 제127조(사법경찰권)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제33조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非違) 정도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

치된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법문상 명확히 하기 위하여 25개 법률 44개 규정을 정비함.

3) 피해자 보호 취지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관련 정비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또는 불송치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자 면담이 가능하게 제도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동복지법」 제21조⁵⁾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피해자 전담검사 제도 등 12개 법률 28개 조문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함.

4)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⁶⁾

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아동복지법」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등을 정비함.

5)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⁷⁾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을 정비함.

6) 그 밖에 추가 범죄 예방 및 인용조문 등 정비

기존에 유사 범죄 및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수행하던 공소청 및 검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⁷⁸⁾ 등 8개 법률 10개 규정을 정비함.

-
- 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그 밖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인용하는 조문 중 같은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된 것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앞에서 설명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비 등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기관 명칭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정비함.

7) 부칙

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과 같은 2026년 10월 2일에 시행하도록 하되, 개정 대상 법률 중 공포 후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3개의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개정안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되도록 함.

[형사소송법 부칙을 통한 정비 대상 법률 69개]

연번	소관 상임위 원회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1	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검찰 등의 수사개시 통보(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2		국가연구개발혁 신법	제37조	검찰 등의 수사개시 통보(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49조의3	성폭력물 등 처리거부 요청 주체(검찰청 명칭 변경),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추가 범죄 예방
4	교육위 원회 (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직위해제 사유(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5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직위해제 사유, 의원면직 징계사유 확인, 조사결과 통보(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6	국방위 원회 (7)	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2	의원면직 제한(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협력 대상 수사기관인 "검찰"을 "공소청" 및 "중수청"으로 변경	공소청 명칭 및 중수청

연번	소관 상임위 원회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신설
8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 제22조	군사기밀 수사기관 미제출 또는 삭제 거부에 대한 처벌 및 특사경 수사지휘 관련	수사권 조정
9		군인사법	제17조의2, 제35조의2, 제59조의3	보직해임 사유, 의원 전역 제한, 조사 수사 시작 및 종료 시 통보(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10		군인연금법	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11		방위사업법	제6조	옴부즈만의 민원사항 조사 대상에서 수사기관 수사 진행 중 사건 제외(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12		병역법	제32조의2, 제61조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종료 통보 및 입영 연기 요청(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13	국토교통위원회 (3)	자동차 관리법	제85조	검사 등의 범칙행위 수사권 삭제	수사권 조정
			제88조	통고처분(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제24조의2	수사기관 장의 운행정지 요청	추가 범죄 예방
14	기후환경노동위원회 (1)	근로기준법	제105조	검사의 수사권 삭제	수사권 조정
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선원법	제127조	검사의 수사권 삭제	수사권 조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8조	검사의 범칙행위 수사권 삭제	수사권 조정	
	제61조	통고처분 송치(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청구	송치사건 처리
18	법제사원위원회 (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9조, 제47조	검찰청 명칭 변경, 검찰청법 인용 정비	공소청 명칭
			제29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재정신청 관할
			제2조, 제3조	공수처 수사대상에 중수청 수사관 추가	중수청 신설
1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3조, 제24조, 제44조	몰수 사실 공지,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공소청 명칭
			제33조, 제48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형소법 인용조문)	인용 조문
20	군사법원법	제121조, 제228조의3, 제286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검찰청 명칭 변경, 사건 이첩, 사건송치(중수청 추가)	공소청 명칭	
		제122조, 제178조, 제179조	수사 촉탁, 구속영장 집행, 사건 이첩, 사건송치 관련 검사 권한 조정	수사권 조정	
21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제6조	검사의 수사지휘, 사경 지휘(검찰청 명칭 변경 및	특사경

연번	소관 상임위 원회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22		특별조치법		검사와 관계 조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4조, 제54조, 제77조 제43조, 제58조	고지, 기소전 몰수보전명령, 추정보전명령 집행, 관할법원 몰수보전명령의 실효(형소법 인용조문)	공소청 명칭 인용조문
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 제42조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검찰청 명칭 변경), 형사조정위원회(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제41조, 제45조	피의사건 형사조정	수사권 조정
24		변호사법	제29조의2, 제35조, 제36조, 제97조의2, 제10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수사기관 미제출 변호 금지,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징계개시의 신청, 변호사 아닌 자의 수사사건 알선, 벌칙(재판, 수사기관 외에 공소청 추가)	송치사건 처리
			제21조의2, 제22조, 제31조, 제89조의7, 제97조의2, 제97조의4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사무직원 범죄경력 조회, 수임제한, 징계개시의 신청, 과태료 부과권자(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3조, 제43조	참가절차 고지,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추정보전명령의 집행	공소청 명칭
			제32조, 제47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형소법 인용조문)	인용 조문
2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성매매피해자 보호조치, 불법원인 관련 사건 수사 참작, 채권무효 고지	피해자 보호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41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등,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증거보전의 특례, 등록정보의 활용, 군검사 관련 간주규정	피해자 보호
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10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결정 집행 미이행 통보(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4	잠정조치의 청구 및 변경,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자 보호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	임시조치의 청구 및 변경,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검사의 결정 전 조사	피해자 보호
			제25조, 제41조, 제53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보호처분의 취소, 이행실태의 조사(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30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 수행 중 징계사유 발견시 징계 청구(사유 조정)	수사권 조정

연번	소관 상임위 원회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31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29조의2	수사기관의 긴급출국금지 요청	송치사건 처리
			제85조	형사절차와의 관계(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3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치료감호대상자 조사	수사권 조정
			제43조	검사의 심사신청	공소청 명칭
			제12조	치료감호의 판결(형소법 인용조문)	인용조문
3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통지등	수사권 조정
3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권한, 의무, 보수 및 수사기간 경과시 지검장에 인계(검찰청 명칭, 검사장 명칭, 검찰청법 인용)	공소청 명칭
3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자 보호
3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 제9조	보좌인 결격사유, 검사 수사 필요 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송치사건 처리
			제9조, 제13조, 제14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등 구조금(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37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재정신청(검찰청 명칭 변경 및 재정신청 관할)	공소청 명칭 및 재정신청 관할
38		형사사법절차에 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문서 열람 복사의 특례(인용 조문 수정)	인용 조문
39	보건복원 위원회 (6)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수사기관 조사 시 보조인 선임 등	피해자 보호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	마약류대책협의회 구성(검찰청 명칭 변경)	중수청 신설
			제11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 요청기관에 검사 명시 여부	추가 범죄 예방
4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검찰청 명칭 변경 + 전담검사 조사 심문)	공소청 명칭 피해자 보호
42		아동복지법	제21조	수사기관 조사 시 보조인 선임 등	피해자 보호
4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료사고심의 신청	송치사건 처리, 수사권
			제53조	자료 요청(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4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수사기관 조사 시 보조인 선임 등	피해자 보호

연번	소관 상임위 원회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45	산업통 상자원 중소기 업위원 회 (1)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38조의4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요청 시 비밀유지 의무 예외	송치사건 처리
46	성평등 가족위 원회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원시설의 수사기관의 조사 동행	피해자 보호
4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 요청	피해자 보호
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8조	친권상실청구,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영상녹화 및 보존, 증거보전의 특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피해자 보호
49		여성폭력방지기 본법	제18조	수사기관 장의 2차피해 방지 교육의무	피해자 보호
5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피해자 보호조치, 불법원인 관련 사건 수사 참작, 채권무효 고지	피해자 보호
51	재정경 제기획 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53조의3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수사개시등 통보, 의원면직의 제한(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5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8조	세무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지명 절차(검찰청 명칭 변경) 압수 물건 인계	공소청 명칭 영장 관련
53	정무위 원회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검찰총장 수사자료 제공	송치사건 처리 및 중수청 신설
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의원면직 제한(송치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의절차 검찰총장 협의	수사권 조정
5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동의를결 검찰총장 협의	수사권 조정
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재정신청 고등검찰청 명칭 변경, 부패혐의 수사기관 고발 관련 검찰 추가 여부 신고(중수청 직원 추가)	공소청 명칭 중수청 신설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제429조의2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검찰총장 수사자료 제공,	추가 범죄 예방
5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추가 범죄 예방
60		국가정보원법	제5조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 구축	추가 범죄 예방
61	정보위 원회 (2)	국가정보원직원 법	제23조	수사기관의 국정원 직원 구속 시 원장에게 통보	송치사건 처리
62	행정안 전위원 회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송치사건 처리
63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3	국외사범 영사조사 및	송치사건

연번	소관 상임위 원회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8)			화상조사	처리, 수사권 수사권 조정
			제9조	검사, 검찰수사관 신속공정수사	
			제49조, 제147조, 제223조	범죄경력조회(검찰청 명칭 변경), 투표사무 보조인 제외(명칭 변경), 당선소송 피고(검찰청 명칭 변경), 재정신청(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64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0조	등록의무자, 등록재산 공개(검찰청 명칭 변경 및 중수청 직원 추가)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
			제8조, 제8조의2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수사권 조정
6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78조의4, 제83조, 제83조의2	직위해제 사유,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수사사실 통보 및 징계시효(검찰 명칭 변경)	송치사건 처리
66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수사개시 등 통보(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67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69조의4, 제73조, 제73조의2	직위해제 사유,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수사사실 통보 및 징계시효(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68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제125조	범칙사건조사 세무공무원 검사장 지명절차, 압수물건의 인계	특사경 및 공소청 명칭
			제28조	유치장(중수청 유치장) 송달	중수청 신설
6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검찰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송치 단계 반영)	송치사건 처리	

나.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 기관 명칭 등의 정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⁹⁾ 등 61개 법률 180개 규정을 정비함.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

2) 그 밖에 인용조문 등 정비

「검찰청법」을 인용하는 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에 맞춰 정비하고, 「공소청법」에서 다른 법률로 정비하도록 한 검사의 파면 징계에 관한 사항¹⁰⁾ 등을 함께 정비함.

3) 부칙

「공소청법」의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0월 2일에 시행하도록 하되, 공포 후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2026. 12. 8.시행)을 개정하는 규정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단서).

또한, 기존의 검찰청 직원이 각각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또는 임용됨에 따라 법무사 등 자격시험의 일부가 면제의 대상이 되는 기존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및 특례(안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를 규정하고, 기존에 ‘검찰’에서 퇴직한 사람에 대해 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10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를 규

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 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10) 「공소청법」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정하는 등 「공소청법」 등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를 보완함.

[공소청법 부칙을 통한 정비 대상 법률 61개]

연번	소관 상임위 원회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1	교육위원회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	자료 제공 요청(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	국토교통위원회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통고처분(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수사 및 처분 결과 자료 제공(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4	기후에너지위원회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7조	사건의 송치(지방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5	농림축산식품위원회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물수 농수산물등 이관(검찰청법 인용 조문 변경)	인용 조문
6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범죄경력 조회(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7		해양경찰법	제6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결격사유(검찰 명칭 변경 및 중수청 직원 포함)	공소청 명칭 및 중수청 신설
8	법제사위원회 (4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7조, 제46조, 제54조, 제55조의5	동행영장의 집행,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시 송치, 보호처분 취소 시 송치, 종결 사건 기록 송부, 이행실태 조사 통보 (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9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검찰청법 인용)	인용 조문
10		검사정원법	제1조, 제2조	정원(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11		검사징계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4, 제8조, 제23조	검사 징계 관련(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제3조	징계 종류(파면 추가)	공소청법 내용 반영
1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구조업무 정의(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13		공증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7,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1조, 제56조, 제65조, 제66조의2, 제66조의4,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78조, 제81조, 제82조, 제90조	공증인 임명, 감독 등(검찰청 등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연번	소관 상임위 원회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14		공탁법	제5조의2	피공탁자 확인(검찰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국가소송 수행자 지정 등(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배심원 선정 제외 사유(검찰 명칭 변경 및 중수청 직원 추가)	공소청 명칭 및 중수청 신설
17		국제수형자이송 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	해외 수용자 국내이송 절차(검찰청, 검사장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1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37조	공조 조치(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1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 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20988호 부칙 제2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권한, 의무, 보수 및 수사기간 경과시 지검장에 인계, 송치사건 보고(검찰청 명칭, 검사장 명칭, 검찰청법 인용)	공소청 명칭
20		디엔에이신원확 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불복절차(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사회봉사의 신청 등, 대상자의 벌금 납입(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2		범죄인 인도법	제3조, 제12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제36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7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인도청구 등(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3		법무사법	제2조, 제5조의2, 제23조	법무사 업무, 시험 면제(검찰사무지령), 사무원 범죄경력조회(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39조, 제40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설치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검찰 조사 호송 시 보호장비 사용(검찰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집행재산등의 반환조치,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7		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28		사면법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특별사면 등의 상신(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연번	소관 상임위 원회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11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검장 지명(검찰청 명칭 변경)	특사경 및 공소청 명칭
3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2조	치료명령 피청구자 조사,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31		소년법	제7조, 제38조, 제49조의2, 제60조	소년부의 형사사건 검찰청 송치, 보호처분 취소,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부정기형 집행 종료(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32		收復地域內所有 者未復舊土地의 復舊登錄과保存 登記등에관한特 別措置法	제7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3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법률 제20989호 부칙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권한, 의무, 보수 및 국가수사본부창 지검장에 신속 송치, 송치사건 보고(검찰청 명칭, 검사장 명칭, 검찰청법 인용)	공소청 명칭
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법률 제20990호 부칙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권한, 의무, 보수 및 국가수사본부창 지검장에 신속 송치, 송치사건 보고(검찰청 명칭, 검사장 명칭, 검찰청법 인용)	공소청 명칭
35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법률 제21315호 부칙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권한, 의무, 보수 및 국가수사본부창 지검장에 신속 송치, 송치사건 보고(검찰청 명칭, 검사장 명칭, 검찰청법 인용)	공소청 명칭
3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피의자 조사 요청, 부착명령의 집행(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3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4조	즉결심판 청구기각, 정식재판 청구(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38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54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39		집행관법	제3조	집행관 임명 자격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4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회생위원 선임 자격 검찰주사보(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42		특별감찰관법	제10조, 제20조	공무원 파견요청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4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44		형법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검찰의 선거방해죄(검찰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연번	소관 상임위 원회	법률명	조문	내용	분류
4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5조	형사보상의 내용, 지급청구, 지급기한, 피의자 보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및 조치, 준용규정	공소청 명칭
4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7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정의, 시스템 운영 협력의무, 협의회 구성, 위임규정(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
4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3, 제12조, 제16조, 제111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협의,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구분수용의 예외, 신입자의 수용, 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제87조	유치장(중수청 유치장)	중수청 신설
49	보건복지위원회 (3)	의료법	제17조	검안서 발급 대상(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5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승인(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5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승인(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52	운영위원회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법경찰관 수행 경호공무원 지정(검찰청 명칭 변경)	특사경 및 공소청 명칭
53	재정경제위원회 (2)	관세법	제116조의4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54		국세징수법	제115조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55	정무위원회 (2)	공공재정 부정부칙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공소제기 등 통보(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5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고위공직자 범위 관련 대검찰청 검사 명칭 변경 및 중수청 추가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
57	행정안전위원회 (5)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	범죄경력조회(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5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공소청 직원 및 중수청 직원 명시)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
5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0조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검찰" 명칭 변경 및 "중수청" 포함)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
			제16조	국가수사본부장 자격(중수청 직원 추가)	중수청 신설
60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6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검찰청 명칭 변경)	공소청 명칭

다.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은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인하여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 등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등의 경우에 그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 조항, 제명 등을 변경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는 역할을 함.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법률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¹¹⁾

다만,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개정방식 이기는 하지만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제 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¹²⁾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개정 기준>

- ① 법률의 개정으로 단순히 조항의 번호가 바뀐 경우에 바뀐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해당 인용조문을 정리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 ② 법률의 제명이나 용어가 바뀐 경우에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해당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경우

11) 법제기준과 실제, 2024 증보판, 국회사무처, 908쪽

12) 법제기준과 실제, 912쪽

- ③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사항을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고 할 때 그 다른 법률의 정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경우
- ④ 기구 신설을 위하여 법률을 개정할 때 신설된 기구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 중 관련 기관의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 ⑤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관련 법률의 해당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 ⑥ 제도의 신설을 위한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 ⑦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경우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선원법」 등의 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태도와 맞지 않게 되는 점에서, 개정안이 「선원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을 부칙을 통해 정비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을 통한 보완수사요구가 원칙적인 수사절차로 정립됨에 따라 중전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을 준용하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¹³⁾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¹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의 수사절차, 영장의 청구,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 공소청 소속 검사의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¹⁵⁾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 삭제와 관련하여 수사처검사 및 특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해당 경과조치만으로 특별검사 등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위공직자범죄

1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15)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중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검사와 수사처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추가 검토 및 보완을 통해 해당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게 됨으로써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 개정의 기준을 넘는 부분은 별도의 개정안(위원회안)으로 정비하는 것이 법제원리에 부합할 것임.

둘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및 공소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강화되었는바,¹⁶⁾ 이러한 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와 영상녹화 및 녹음을 통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은 군검사 및 군수사

16)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사법경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27. 8. 5.]

② ~ ⑤ (생략)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일: 2027. 8. 5.]

②·③ (생략)

기관의 공소 및 수사업무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바, 군사시설의 특수성, 전자적 관리와 영상녹화 및 녹음에 필요한 군수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 보완에 드는 재정적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정비가 뒤따를 필요가 있음.

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 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및 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송치된 형사사건의 공소제기 처분 등을 담당하는 공소기관으로 법적 기능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검찰청 및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및 「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2의 ‘의원면직 제한’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인사 제도 및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단계에서도 해당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즉, ‘수사 개시 통보’ 및 ‘의원면직 제한’의 사유를 각각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 및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각각 정비하는 내용임.

또한, 「변호사법」 제36조의 사건 소개 금지 규정¹⁷⁾과 같이 수사

17) 「변호사법」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입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계 외에 공소의 제기·유지 단계에서 그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의 경우에도 공소의 제기·유지 단계에 해당 규정들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개정안은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변호사법」 제30조, 제37조의2 및 제117조의 “재판이나 수사업무”와 같이 ‘공소의 제기·유지 업무’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언상 명백하지 않은 규정들을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들이 ‘공소의 제기·유지 업무’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법」 개정부분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u>재판이나 수사 업무</u> 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현행과 같음)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 ----- ----- <u>재판, 공소의 제기·유지 또는 수사 업무</u> ----- ----- -----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		----- -----.
--------------------------	--	-----------------

둘째, 개정안 중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의 개정 부분은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오히려 개정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과 송치된 사건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부분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 ----- ----- -----. -----.	제46조(벌칙)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3.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	3. ----- ----- ----- ----- ----- -----	3. ----- ----- ----- ----- ----- -----

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피해자 보조인 제도, 피해자 전담검사 제도 등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개정안은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이 범죄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시에도 관련 법률의 ‘보조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방향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특정범죄자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등보좌인 제도,¹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¹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및 비밀누설 금지의 규정,²⁰⁾ 및 「**인신매**

1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3. 30.>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
 석 및 피해자 외국인 지원 제도²¹⁾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
 담’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정범죄자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부분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② (생략)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② (현행과 같음)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u>수사·공판 과정</u> 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 ----- <u>수사·공판 과정</u>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u>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u>)-----.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④ ~ ⑩ (개정안과 같음)

2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하였는바,²²⁾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등을 ‘협력관계’에 따라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변경되었음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²³⁾ 「지방세기본법」²⁴⁾ 및

22)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4)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범죄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죄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²⁵⁾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자를 해당 공소청의 장이 제청을 받아 지명하거나 보고를 받은 자로 규정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사상 기존과 같이 ‘지휘관계’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는바,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명할 수 있도록 등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부분 수정의견＞

현행	「공소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수정의견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u>관할 지방</u>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지방공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지방공소

1. 2. (생략)

2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u>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u>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u>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u>)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53. (생략) 제7조의2(<u>국립공원공단 임직원</u>)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u>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u>	<u>소청장에게 보고한</u> ----- ----- ----- ----- -----. 제5조(<u>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u>) -----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 ----- ----- ----- ----- ----- -----. 1. ~ 53. (생략) 제7조의2(<u>국립공원공단 임직원</u>) ----- ----- ----- <u>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u>	<u>청과 통보한</u> ----- ----- ----- ----- -----. 제5조(<u>지방공소청장과의 협의로 지명하는 사법경찰관리</u>) ----- -----그 소속 관서의 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과 협의하여 ----- ----- ----- ----- ----- ----- -----. 1. ~ 53. (개정안과 같음) 제7조의2(<u>국립공원공단 임직원</u>) ----- ----- <u>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u>
---	---	---

영에 관한 법률」 27) 등에 따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로 정비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된 것과 달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형사사건의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은 「군사법원법」의 특수성²⁸⁾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 따를 필요가 있음.

26) 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8) 「군사법원법」은 1심사건을 군사법원이 관할하고, 같은 법률에는 지방법원의 심판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변경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부분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별)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u>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별) ① ----- ----- ----- ----- ----- <u>그 검사 소속의 광역공소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u> ----- -----.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별) ① ----- ----- ----- ----- ----- <u>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u> ----- -----.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바. 그 밖에 추가 범죄 예방 및 인용조문 등 정비

1)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공소청 및 검사의 권한 유지 관련

개정안은 기존에 유사 범죄 및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수행하던 공소청 및 검사의 역할 및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검찰청’ 및 ‘검사’가 수행하던 역할 및 책무를 「공소청법」에 따라 변경되는 ‘공소청’ 및 ‘검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이

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취지로 보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부분>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③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 ----- ----- -----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1. ----- ----- ----- ----- ----- ----- ----- ----- ----- -----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u>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u>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u>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및 검사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등에 따른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2) 개정 형사소송법의 인용 조문 정비 관련

그 밖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경된 조문의 위치 등에 맞춰 정비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으로 단순히 조항의 번호가 바뀐 경우에 바뀐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해당 인용조문을 정리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3.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제명이나 용어가 바뀐 경우에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해당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종전의 「검찰청법」에서 “검찰청”이 검찰 전체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과 달리,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은 종전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점에서,²⁹⁾ 단순히 “검찰청”이나 “검찰”을 “공소청”으로 용어만 변경할 경우에 대응하는 기관이 문언상 달라질 소지가 있는바, 정비 대상 법률에서 해당 용어가 의미하는 기관의 범위(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를 명확히 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부분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29) 「공소청법」

제2조(공소청)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등) ①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u>검찰청</u>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② ----- ----- ----- ----- ----- <u>공소청</u> ----- -----.	② ----- ----- ----- ----- ----- <u>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또한, 개정안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8호³⁰⁾의 개정부분의 경우, 공소청 직원에 대해서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려다가 입은 재해”를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³¹⁾ 상 공소청 직원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공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

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31) 개정 형사소송법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①·② (생략)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

④ (생략)

하여 수정이 필요함.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부분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 ----- ----- -----.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 ----- 수사 ----- ----- -----	8.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이 조에서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 ----- 수사(공소청 직원은 제외한다)----- -----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9. ~ 11. (현행과 같음)

4. 종합의견

2개 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설립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청 및 검사의 기능,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에 맞추어, 종전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제명이나 조항 등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 조항, 제명 등을 변경하고,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리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입법 및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것임.

다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상설 특별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수사권한 및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의 보완,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시에도 관련 법률의 ‘보조인 제도’가 적용되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 제도 등에도 적용되도록 추가 검토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추가 검토 및 보완으로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게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은 별도의 개정안(위원회안)으로 정비하는 것이 법제원리에 부합할 것임.

또한,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종전의 “검찰청”이나 “검찰”을 단순히 “공소청”만으로 용어 정비하게 되면 현행 규정에 대응하는 공소청이 대검찰청에 대응한 공소청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괄하는 의미인지 또는 일부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등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비 용어가 의미하는 기관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6